붙임 상반기 주요 질의에 대한 FAQ

차 목

	< 이용아동선정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								
1	우선돌봄아동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연령 기준이 있나요?	5							
2	돌봄 필요시간 확인서를 필수 운영시간을 14:00~19:00로 조정하지 않더라도 받아야 하나요?	6							
3	센터 운영시간이 연장되면서 종사자의 근무시간보다 센터 운영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7							
4	자원봉사자를 배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나요?	8							
5	시설장이 퇴직으로 공석이 된 시설장으로 기존에 근무하던 생활복지를 공개모집 없이 시설장으로 채용 가능한가요?	9							
6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를 설치 운영자가 수행해도 되나요?	11							
	< 지역아동센터 예산 관리 및 평가 >								
7	최소 프로그램비 기준액이 월을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고 해당금액 이상을 반드시 지출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매월 최소 프로그램비 기준액에 맞춰 지출해야 하나요?	12							
8	비영리법인 시설 활성화 및 규모화 지원 추가운영비를 종사자 수당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추가운영비 전액을 수당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13							
9	4대보험료 사업자 부담금에서 발생한 절감분은 해당 종사자 본인 인건비로 활용 가능한데, 4대보험 중 일부 보험 가입이 불가한 대상도 인건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14							
10	생활복지사 퇴사로 신규 생활복지사 고개모집에도 응시자가 없어 60세 초과 생활복지사를 신규 특례 채용할 경우, 60세 초과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대한 특례기준이 적용되어 국고보조금 으로 지원이 되나요?	15							
11	법정의무교육의 비용도 국고보조금에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16							
12	신규센터의 경우 자부담 기간 2년을 반드시 경과해야 진입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17							

문의주체	문의 유형	상담 및 처리 내용		
지자체	지침	Q1. 우선돌봄아동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연령 기준 있나요?		
		A.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42p. 우선돌봄아동 상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의 아동 구성원에 대한 연령 기준은 별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p.41~42 나, 우선돌봄아동 및 일반아동 1) 우선돌봄아동 : 증명서, 확인서 등을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자임이 확인되는 아동 또는 돌봄 득례에 해당하는 아동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개별가구'를 기준으로 판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다) 「의료급여법」제3조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라)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 장애인인 아동 마)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사)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사)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2) 일반아동 : 우선돌봄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3) 돌봄 특례 : 일반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3) 돌봄 특례 : 일반아동에 해당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 우선돌봄아동으로 선정 가능 * 돌봄시비스 제공・변경신청서[서식2호] 신청・접수시 보호자와 상담(유선 또는 대면) 후 돌봄필요성 확인결과서[서식2호회를 작성, 내부결재 후 결정 가) 주민등록상 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가출・행방불명・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부모 가족이거나 조손가족인 아동으로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나) 보호자의 질병(중증 만성질환, 암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다) 보호자의 질병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약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다) 기로자의 실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약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다) 맞벌이 가정의 아동으로서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마) 맞벌이 가정의 아동으로서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본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마) 맞벙이 가정의 아동으로서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마) 맞벌이 가정의 아동으로서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문의주체	문의 유형	상담 및 처리 내용
지역아동센터	지침	Q2. 돌봄 필요시간 확인서를 필수 운영시간을 14:00~19:00로 조정하지 않더라도 받아야 하나요?

A.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49p. 돌봄 필요시간 확인서는 센터운영시간 결정을 위한 사전 조사 문서로 운영시간을 조정하지 않더라도 매학기(3월, 9월) 시작 전 작성하여 보관해야합니다. 운영시간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돌봄 필요시간 확인서는 센터에서 보관하시고 사본은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p.49

다. 운영시간

- 1) 월~금요일을 포함하여 주 5일,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 하여야 함
- 지역아동센터는 상시 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이므로 교사의 하계휴가사용 등의 사유로 임시휴원(일명 방학)은 불가하며, 종사자의 순번제 하계휴가계획 등을 수립 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야 함
- 2) 학교의 학기 중 또는 방학에 따라 센터의 기본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이 함

필수 운영시간 (기본 운영시간 8시간)

- 학기 중: 14:00~20:00(필수 운영시간)
- 방학(단기방학 포함): 12:00~17:00(필수 운영시간)
- ※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u>매 학기 시작 전후(3월, 9월) 각 센터는 이용아동 별 돌봄 필요시간을 확인</u>하고, 19시 이후 돌봄수요가 없는 센터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자체 보고 후 필수 운영시간을 14:00~19:00로 조정 가능
- ※ 돌봄 필요시간 확인서[서식 7-1호]를 센터별로 보관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사본 제출
- ※ 운영시간 조정 이후에도 일시돌봄 등 수요 발생시 해당일은 20시까지 운영 필요
- 종사자 휴게시간은 운영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종사자의 근무시간은 1일 최대 8시간(휴게시간 제외)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 센터의 운영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종사자는 운영시간 중 교차하여 8시간 근무 가능
- 3) 토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5.1) 운영은 지역여건과 센터 실정에 따라 아동이 방임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운영시에는 반드시 시설장 또는 생활복지사 1인 이상이 근무하여야 하며, 그 외 자원봉사자 등을 적극 활용함
- 4)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초·중·고등학교 등이 휴업명령 이나 휴교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의 휴무를 원칙(운영일수에는 포함)으로 하고, 휴무에 대한 사항을 보호자 및 이용아동 등에게 알려야 함

문의주체	문의 유형	상담 및 처리 내용			
지역이동센터	지침	Q3. 센터 운영시간이 연장되면서 종사자의 근무시간보다 센터 운영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49p. 센터 운영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센터 운영시간 중 종사자 간 근무시간을 교차하여 8시간 근무하도록 조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센터 운영규정을 통해 종사자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1일 최대 근무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 필요합니다.

*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p.49

다. 운영시간

- 1) 월~금요일을 포함하여 주 5일,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 하여야 함
- 지역아동센터는 상시 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이므로 교사의 하계휴가사용 등의 사유로 임시휴원(일명 방학)은 불가하며, 종사자의 순번제 하계휴가계획 등을 수립 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야 함
- 2) 학교의 학기 중 또는 방학에 따라 센터의 기본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이 함

필수 운영시간 (기본 운영시간 8시간)

- 학기 중: 14:00~20:00(필수 운영시간)
- 방학(단기방학 포함) : 12:00~17:00(필수 운영시간)
- ※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매 학기 시작 전후(3월, 9월) 각 센터는 이용아동 별 돌봄 필요시간을 확인하고, 19시 이후 돌봄수요가 없는 센터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자체 보고 후 필수 운영시간을 14:00~19:00로 조정 가능
- ※ 돌봄 필요시간 확인서[서식 7-1호]를 센터별로 보관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사본 제출
- ※ 운영시간 조정 이후에도 일시돌봄 등 수요 발생시 해당일은 20시까지 운영 필요
- 종사자 휴게시간은 운영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종사자의 근무시간은 1일 최대 8시간(휴게시간 제외)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u>※ 센터의 운영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종사자는 운영시간 중 교차하여 8시간</u> <u>근무 가능</u>
- 3) 토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5.1) 운영은 지역여건과 센터 실정에 따라 아동이 방임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운영시에는 반드시 시설장 또는 생활복지사 1인 이상이 근무하여야 하며, 그 외 자원봉사자 등을 적극 활용함
- 4)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초·중·고등학교 등이 휴업명령 이나 휴교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의 휴무를 원칙(운영일수에는 포함)으로 하고, 휴무에 대한 사항을 보호자 및 이용아동 등에게 알려야 함

문의주체	문의 유형	상담 및 처리 내용			
지역아동센터	지침	Q4. 자원봉사자를 배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범죄 경력을 조회 해야 하나요?			

A.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56p. 채용 예정자 및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범죄경력을 조회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범위에 무보수 자원 봉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범죄경력조회는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p.55~56

다. 종사자 채용

- 1) ~ 3) (생략)
- 4) 종사자 자격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확인
- 가)「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아동복지법」제17조 및 제71조에 따라 종사자 자격 결격사유 확인하여야 함
- 나)「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4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에 따라 채용 예정자 및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하여야 함(crims.police.go.kr)
 - **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란,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근로자(일일강사 포함), 사회복무요원 등이 되며,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차량기사, 용역업체 직원 등도 해당됨(무보수 자원봉사자는 제외)
- 5) 종사자 채용계약 시 준수사항(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3)
- 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의 종사자를 채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변경 하여 채용할 수 없음
- 나)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종사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없음
 - *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적용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문의주체	문의 유형	상담 및 처리 내용				
시도지원단	지침	Q5. 시설장이 퇴직으로 공석이 된 시설장으로 기존에 근무히 생활복지를 공개모집 없이 시설장으로 채용 가능한가요				
		 A. 2023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9p. 공개모집의 원칙의 예외 관련 충족해야할 전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사람일 것 2. 동일한 설치 운영자와 근로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3.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절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4.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할 것의 위 4가지의 전제사항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공개모집 원칙의예외를 적용할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2023년 지역아동센터 관리안내 24p 종사자 자격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39p.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제 하에 공개모집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있음 [전제사항] ②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사람일 것 ④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⑤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⑥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가. 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 인자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 * 채용 당시 ①에서 제시된 전제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등이 정규직 전환이				
		발요한 경우에도 시설 내에서 보적이 변경되는 경우로 적용 가능 나. 동일한 설치·운영자'가 각각 설치·운영하는 시설 간 인사 이동 * 다만, 시설정으로 근무 중인 성직자(聖職者)가 소속 종교 단체의 인사발령으로 타시설의 시설장으로 인사 이동하는 경우, 해당 종교 단체를 '동일한 설치·운영자,로 볼 수 있음(21.1.1.부터 시행) (단. 종교 단체의 인사발령 문서 등 내부 의사결정 사항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함.) 다. 설치·운영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사무국'에 근무하다, 그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 * 법인 정관 또는 하위 규정에 따른 사무국 조직 및 정원 등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라.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이 통합되는 경우나 시설 위·수탁 계약에 따라 종전 중사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는 경우 마.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휴직한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 고용된 경우'로서, 그 고용의 원인이 된 출산·육아 휴직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따라 해당 대체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대체근무자로 최초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하여야 함 ② ①의[전제사항]⑤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문의주체	문의 유형	상담 및 처리 내용
	116	
		나. 종사자 자격기준
		1) 종사자의 자격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제52조 및 별표15) 가) 시설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5)「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생활복지사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설장의 결격사유
		가)「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제2항 관련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문의주체	문의 유형	상담 및 처리 내용		
지역아동센터	지침	Q6.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를 설치 운영자가 수행해도 되나요?		

A.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68p. 동승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지명하며, 대상자는 성인 외에는 지명 대상자에 대한 별도 조건이 없습니다. 단, 지명된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p.68~69

나.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 준수사항

- 1) 「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상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가)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 발급받 아 어린이 통학버스 안에 상시 비치하여야 함
 - ※ 자동차안전기준(자동차부품규칙)에서 정한 구조, 어린이보호표지, 보험, 소유관 계
- 나)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여야 함
- 다) 어린이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가 좌석안전띠를 매도 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 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함
- 라) 성년인 사람 중 <u>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u> <u>운행</u>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마)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가 모 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야 함
- 사) 동승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 착하여서는 안 됨
- 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서식32호]를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시·군·구청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함
- 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u>동승보호자는 어린이통학</u> <u>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u>
- 2) 경유자동차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규 신고 불가('23.4.3.부터)

문의주체	문의 유형	상담 및 처리 내용
시도지원단	지침	Q7. 최소 프로그램비 기준액이 월을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고 해당금액 이상을 반드시 지출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매월 최소프로그램비 기준액에 맞춰 지출해야 하나요?

A.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115p. 최소 프로그램비 이상 지출 기준은 월 평균금액입니다. 월 평균 금액은 '연간 지출한 프로 그램비 총액 ÷ 보조금을 지원 받은 개월 수'로 매월 '기본운영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 지원기준'에 제시된 최소 프로그램비 기준에 맞춰 지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연간 총 지출액의 월 평균 금액을 산출했을 때 제시된 최소 프로그램비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 *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p.115
- 나. 운영비 지원
- 1) 기본운영비(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 지원기준

정원 -	구분	법정 종사자 수	월 기준액	최소 프로그램비 기준
10 1001 01=1	동 지역	्राप्ते	1,060천원	480천원
10~19인 이하	읍·면 지역	2명	1,231천원	490천원
20 2001 01=1	동 지역	2명	1,384천원	500천원
20~29인 이하	읍·면 지역		1,580천원	520천원
2001 0144	동 지역	3명	1,460천원	500천원
30인 이상	읍·면 지역	3명	1,645천원	520천원

- ※ 10인 미만 시설은 1,060천원 내에서 지자체가 결정
- ※ 법정종사자란「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4에 따라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종사자인 시설장과 생활복지사를 말함
- 가) 월 평균 프로그램비는 최소 프로그램비 기준 이상을 반드시 지출하여야 함
- 나) 지자체가 지역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하는 운영비는 지자체 기준에 따라 지출

문의주체	문의 유형	상담 및 처리 내용
지자체	지침	Q8. 비영리법인 시설 활성화 및 규모화 지원 추가운영비를 종사자 수당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추가운영비 전액을 수당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A 0000년 10년이도 베티 카이 나이이나!! 44도 주의 오랜데이 피펜 기포오

A.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115p. 추가 운영비의 집행 기준은 기본운영비 집행기준의 따라 집행하되, 비영리 법인 관련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한 수당으로 집행 가능 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간 전용이 불가하지만 추가 운영비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건비로 전액 전용 가능합니다. 다만, 전용할 경우 예산 전용절차에 따라 인건비 전용을 진행해야 합니다.

*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p.114 ~ 116

가. 일반원칙

- 1) 신고 정원, 지역별 특성 및 법정종사자 수 등에 따라 지원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자체 재원으로 추가지원 가능
- 2) 운영비와 인건비 간 전용 불가
- 3) ~ 6) (생략)

나. 운영비 지원

1) 기본운영비(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 지원기준

정원 -	구분	법정 종사자 수	월 기준액	최소 프로그램비 기준
10. 1001 01=1	동 지역	ODE	1,060천원	480천원
10~19인 이하	읍·면 지역	2명	1,231천원	490천원
20. 2001 01=1	동 지역	2명	1,384천원	500천원
20~29인 이하	읍·면 지역		1,580천원	520천원
30인 이상	동 지역	3명	1,460천원	500천원
	읍·면 지역	3명	1,645천원	520천원

- ※ 10인 미만 시설은 1,060천원 내에서 지자체가 결정
- ** 법정종사자란「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4에 따라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종사자인 시설장과 생활복지사를 말함
- 가) 월평균 프로그램비는 최소 프로그램비 기준 이상을 반드시 지출하여야 함
- 나) 지자체가 지역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하는 운영비는 지자체 기준에 따라 지출 2) 추가 운영비 지원
- 가) 목적: 비영리법인 시설 활성화 및 규모화 지원
- 나) 지원대상: 2개소 이상의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비영리법인(지자체 포함) 소속 시설
- 다) 지원기간: 2개소 이상의 센터 운영 시작일 기준 12개월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시설별로 지원 (예) 비영리법인이 2개소 이상의 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한 날이 2022년 3월 15일→2023년 4월부터 지원 가능라) 지원기준

정원 구분	월 기준액
19인 이하	20만원
20~29인 이하	25만원
30인 이상	30만원

- <u>마) 집행기준: 추가 운영비는 기본운영비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되, 비영리법인 관련 업무를</u> 추가로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한 수당으로 집행 가능
- ※ 수당 지급기준 및 방법 등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문의주체	문의 유형	상담 및 처리 내용
지역아동센터	지침	Q9. 4대보험료 사업자 부담금에서 발생한 절감분은 해당 종사자 본인 인건비로 활용 가능한데, 4대보험 중 일부 보험 가입이 불가한 대상도 인건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A.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60p. 및 116p.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에서 발생한 절감분은 해당 종사자 본인 인건비로 활용 가능하며, 4대보험 미가입으로 생긴 절감분도 인건비로 활용 가능합니다.

*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p.60

- 3) 사회보험
- 가) 법령에 따라 종사자를 위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www.4insure.or.kr 참조)
- 나) <u>다만, 개인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법인시설의 대표자(이사장)가 동 시설의 시설장으로 종사하는 경우 시설장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불가</u>

※ 사회 보험료지원사업안내: 근로복지공단(☎1588-0075), 홈페이지 (insurancesupport.or.kr)

*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p.116 다. 인건비 지원

1) 편성기준

정원 구분	법정 종사자 수	월 기준액
10인 이하	1명	2,976천원
10~19인 이하	2명	5,586천원
20~29인 이하	20	0,00012
30인 이상	3명	8,196천원

- ※ 시설장 월 2,976천원 (월지급액 2,494,000원+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월지 급액의 19.31%))
- ※ 생활복지사 월 2,610천원 (월지급액 2,187,000원 +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 및 퇴직적립 금(월지급액의 19.31%))
- 2) 편성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지역여건 및 종사자의 경력 등을 고려한 지자체 별도 기준 마련·적용 가능
- 3) 4대보험료 사업자 부담금에서 발생한 절감분은 해당 종사자 본인 인건비로 활용 가능
- 4) 국고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생활복지사는 시설의 기본운영시간(8시간) 동안 상근 해야 함
- ※ 시설장은「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상근해야 함
- 5) 종사자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미충족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부터 해당 인원의 인건비 보조금 교부 중지

문의주체	문의 유형	상담 및 처리 내용
지역이동센터	지침	Q10. 생활복지사 퇴사로 신규 생활복지사 고개모집에도 응시자가 없어 60세 초과 생활복지사를 신규 특례 채용할 경우, 60세 초과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대한 특례기준이 적용되어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나요?
		A.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117p. 60세 초과 종사자의 인건비특례 기준은 신규채용에 대한 기준이 아닌 기존 종사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한 조건이므로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신규채용으로 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p.117 □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령까지만 정부보조금 인건비를 지원함. 이를 초과하는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급 상한기준일을 초과한 다음달부터 연령초과 인력 인건비에 해당하는 보조금 교부 중지 ○ 지급상한 : 시설장 65세, 생활복지사 60세 ○ 지급상한기준일(지급상한일자는 해당 종사자(시설장 포함)의 출생일 기준) - 1월에서 6월 사이 지급상한일자 : 6월 30일 - 7월에서 12월 사이 지급상한일자 : 12월 31일
		 □ 동 제도는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부예산의 지급 기준임 ○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종사자가 비리를 자행하는 경우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시설정년제 권고) 사회복지시설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시설 사유화의식 탈피 및 조직쇄신 차원에서 정년제 실시를 권고함
		□ 60세 초과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에 대한 특례 기준 ○ 60세 초과 종사자를 대체할 사람을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 - 복지넷(www.bokji.net),워크넷(www.work.go.kr),희망이음(www.ssis.go.kr),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중 3곳 이상(단, 복지넷, 워크넷, 희망이음 중 2곳은 반드시 공고)에 15일 이상 공개모집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1회 이상 다시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 60세를 초과한 종사자의 특례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 63세까지는 공모절차 없이 재계약 가능하며, 63세를 초과하여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의 방식으로 1회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여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65세까지 계약 연장 및 인건비 보조금 지원 가능 ※ 60세 초과 종사자를 특례 채용한 경우에는 특례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호봉으로 동결(이후 호봉 승급 없음) ○ 60세 초과 종사자의 기존 인건비 내에서 청년 인력(만 29세 이하)을 채용하는 경우 신규 채용 및 인력 운용 계획을 시설운영위원회 또는 법인이사회를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 - 위의 계획에는 60세 초과 종사자 및 신규 채용 인력 2인의 인건비를 60세 초과 종사자의 기존 인건비 100% 내에서 지급하되, 60세 초과자의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가)와 나)에 따른 절차를 거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6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음

로의 유형	상담 및 처리 내용
교육	Q11. 법정의무교육의 비용도 국고보조금에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u> </u>	- ㅋ 유형

A.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152p. 종사자 교육여비는 중앙부처 (중앙부처 지정 전문기관 포함) 및 지자체, 아동권리보장원 및 시도 지원단 주관 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기타 선택교육 인정기관 주관 선택교육에 한하여 보조금으로 지출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앙부처 및 중앙부처 지정 전문기관에서 주관하는 법정 의무교육은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하며, 종사자 교육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 교통비는 '여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 *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p.151~152
- 나) 세출항목별 사용 기준
- (3) 운영비(01-13)
- (가) 운영비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기타운영비를 말함
- (나) 여비는 종사자 교육 및 시설 운영을 위한 회의・업무협의 등 출장에 따른 교통비를 말함
 - ① <u>종사자 교육여비는 중앙부처(중앙부처 지정 전문기관 포함) 및 지자체, 아동권리</u> 보장원 및 시도지원단 주관 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기타 선택교육 인정기관 주관 선택교육에 한하여 보조금으로 지출 가능
-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인증 요원 교육 및 보수교육(일명 VMS교육) 보조금 지출 가능
- ※ 이 경우 소요되는 종사자 교육비는 보조금(수용비 및 수수료)으로 집행 가능
- ② 출장여비는 시설 운영을 위한 회의·업무협의 등에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으로 지출 가능
- ③ 개인차량 이용 시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교통비를 산출·지급

	ПО	
문의주체	문의 유형	상담 및 처리 내용
지역이동센터	평가	Q12. 신규센터의 경우 자부담 기간 2년을 반드시 경과해야 진입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170p. 진입평가 대상 시설은 진입평가 신청 전까지 12개월 이상 진입평가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운영한 실적이 있는 시설은 자부담 기간 2년 이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평가 결과에 따라 2년이 경과된 익월부터 국고보조금이 즉시 교부됩니다.
		*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p.169~170 가. 대상 1) 진입평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부담 시설 가) 진입평가 신청 전까지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매월 이용아동수가 10명 이상이 면서 신고정원의 70% 이상 유지하고 있는 시설 ※ 지자체에서 돌봄서비스 이용을 결정한 아동수가 신고정원의 70%이상이더 라도, 10명 미만이라면 비대상임 ※ 예를 들어 신고정원이 12명인 경우로 70% 이상인 9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더라도 최소 10명 이상이 안되므로 신청불가 ※ 이용아동수(현원) 산정시 장애아동은 1인을 2인으로 적용하고, 최대 5인을 10인까지 산정 가능(장애아동은 등록 장애인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결과 장애 소견자에 한함) 나) 진입평가 신청 전까지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매월 법정종사자를 결원 없이 유지하고 있는 시설 ※ 종사자의 사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였더라도 해당 월에 충원이 즉시 이루어진 경우는 유지로 인정 다) 진입평가 신청 전까지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시설라) 진입평가 신청 전까지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화재보험 가입 및 유지하고 있는시설 마) 진입평가 신청 전까지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을 활용하고 있는 시설 바) 진입평가 신청 전까지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을 활용하고 있는 시설